

종합감사

감사 보고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종합감사 -

2025. 6.

교 육 부

감사결과와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기관이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 요구 사항	5
(1) 불분명한 사유로 소청심사 결정 연장 부적정(통보)	5
(2) 소청심사 기피신청 운영 부적정(권고)	8
(3)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구제조치 이행관리 미흡(개선)	11
(4) 소송비용 청구 및 처리 지연(기관주의, 통보)	17
IV. 현지조치 사항	26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주기를 고려할 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4년 행정감사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예산 및 회계 관리, 복무 관리, 소청·고충 청구 및 송무 업무 관련, 소송비용 업무,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주요 언론 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2024. 2. 22.부터 3. 4.까지 7일간 감사 인원 7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2. 29. 위원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개최하고, 2024. 7. 2. 서면으로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2. 20. 감사처분심의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현황¹⁾

1. 주요 연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1991년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설립되어 2005년 현재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위원 현황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표 1]과 같이 2024. 1. 1. 기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직위	성명	임기	현 소속	분야
위원장	A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B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 위원	C	-	○○	-
	D	-	□□	-
	E	-	△△	-
	F	-	▷▷	-
	G	-	▽▽	-
	H	-	◁◁	-
	I	-	◇◇	-
	J	-	♡♡	-
	K	-	♣♣	-
	L	-	♠♠	-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3. 직원 현황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표 2]와 같이 2024. 1. 1. 기준 직원 정원 27명, 현원 26명이다.

[표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고위 공무원단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	2	1	1	11	5	4	2	1	27
현원	2	1	1	11	5	3	3	-	26

4. 예산 현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예산은 [표 3]과 같이 2023년 3,455백만 원에서 2024년 3,308백만 원으로 147백만 원(4.25%) 감소하였다.

[표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건비	1,902	1,925	2,096	1,849
기본경비(총액대상)	117	106	107	112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211	1,473	1,252	1,347
합계	3,230	3,504	3,455	3,308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별도조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교원소청 심사 위원회	-	-	-	-	-	· 기관주의 1건 · 권고 1건 · 개선 1건 · 통보 2건 【합계 5건】	-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심사기한 연장

-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심사 결정 법정기한(60일+30일)을 초과한 406건에 대해 일괄 “신중한 검토”를 사유로 연장

(나) 기피신청 기회

- 인사혁신처 소청위와 달리 청구인에게 심사 당일 기피신청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사전 기피신청 제도만 운영

(다) 심사결정 이행

- 내부규정 미정비 등 구제조치 이행관리 방안 마련에 소홀하여 지도·감독기관이 소청심사 결정을 불이행하고 있는 처분권자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지연

(라) 소송비용 청구

- 소송비용 발생에 따른 독촉장 발급 지연(12~22일) 및 소송비용 위탁 처리 업무 지연(최대 521일)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 결정을 연장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방안 마련을 통보하는 등 총 4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였다.

2. 처분 요구 사항: 4건[붙임 참조]

교 육 부
통보

제 목 불분명한 사유로 소청심사 결정 연장 부적정

소 관 기 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조 치 기 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내 용

1. 업무개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라 한다)는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원지위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교원소청위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교원소청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소청위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경우에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확인하여야 했다.

아울러, 「교원소청위 교원소청심사 업무편람」은 교원소청제도의 의의와 교원소청위의 설치 목적을 교원의 신분보장 및 정당한 권익구제에 기여하기 위함에 두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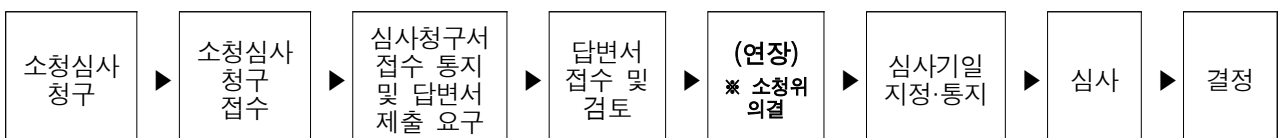
그런데 [표 1]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소청위가 교원소청심사 결정 법정기한(60일+30일)을 초과한 406건에 대해 [표 2]의 교원소청 처리 절차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중한 검토”라는 사유로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신속하게 취소 또는 변경을 기대하는 교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교원소청위 교원소청심사 업무편람」에서 밝히고 있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정당한 권익구제에 기여한다는 교원소청제도의 의의와 교원소청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표 1] 교원소청심사 결정 법정기한(60일+30일) 초과 현황

구분	90일 초과						
	청구인 연기신청		피청구인 연기신청		위원회 처리기한 연장 ※ (사유) “신중한 검토”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2021년	82	33.6%	14	5.7%	148	60.7%	244
2022년	94	39.2%	13	5.4%	133	55.4%	240
2023년	101	43.5%	6	2.6%	125	53.9%	232
계	277	38.7%	33	4.6%	406	56.7%	716

[표 2] 교원소청 처리 절차(연장)



관계기관 의견

교원소청위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종합감사 이후 후속 조치사항으로 결정기한 연장 시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교원소청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을 연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권 고

제 목 소청심사 기피신청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조 치 기 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내 용

1. 업무개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라 한다)는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원지위법」 제10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소청심사 당사자는 교원소청위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교원소청위 교원소청심사 업무편람」은 교원소청제도의 의의를 교원의 신분보장 및 정당한 권익구제에 기여하기 위함에 두고 있다.

따라서 교원소청위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정당한 권익구제를 위해 소청심사 당사자가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교원소청위는 사전 기피신청 절차만을 두면서 홈페이지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기피신청서 서식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어, 소청심사 당사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사회의 전에 교원소청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교원소청위 의결을 통해 당사자 기피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당일 심사회의 진행 과정에서 기피신청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두고 있지 않아, 「교원지위법」 제10조5 제2항의 교원 소청위의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기피신청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사전 기피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그림]과 같이 심사회의 진행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회의 당일에도 위원장이 소청심사 당사자에게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의사가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기피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회의 진행 절차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교원소청위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기피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는 점, 사전에 기피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당일 심사회의를 내어서 당사자의 기피신청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교원지위법」 제10조의5의 제2항에서는 기피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소청심사 당사자가 교원소청위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소청위는 이를 사전 기피신청제도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소청위의 의견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원소청위는 사전 기피신청제도만을 운영하고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소청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성격이 유사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피신청제도에 비해 소청심사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치할 사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청심사 당사자에게 심사 당일에도 위원 중에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피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교 육 부

개선

제 목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구제조치 이행관리 미흡

소 관 기 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조 치 기 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내 용

1. 업무개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라 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교원의 징계 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한 소청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은 절차로 이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소청심사 결정 이후 이행관리 절차

소관 기관	내 용	기한	법령·규정
교원소청위	< 소청심사 결정 > (교원소청위 → 처분권자)	60일 이내(+30일)	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
처분권자	< 구제조치 및 결과 제출 > (처분권자 → 교원소청위)	30일 이내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교원소청위	< 구제조치 이행 여부 확인 > (교원소청위) < 구제조치 이행 촉구·독려 > (교원소청위 → 처분권자·지도·감독기관)	-	심사규정 제29조 (내부규정)
	< 구제조치 이행 결과 통지 > (교원소청위 → 지도·감독기관)	-	-
↓ (상당한 기일 경과 후)			
지도·감독기관	< 구제조치 불이행 시 구제명령 / 구제명령 이행 > (지도·감독기관 → 처분권자 / 처분권자)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 (재임용은 90일 이내)	교원지위법 제10조의3 등
	<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 (지도·감독기관 → 처분권자)	30일 전까지 사전 통지 (+10일이상 진술 기회 부여)	교원지위법 제10조의4 등
	<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지도·감독기관 → 처분권자)	15일 이내	교원지위법 제10조의4 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소청위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위의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위에 제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2에 따르면 교원소청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2021년 3월 23일 일부 개정된 「같은 법」의 신설 조항인 제10조의3(구제명령) 및 제10조의4(이행강제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²⁾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처분권자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³⁾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 이전 「교원지위법」에서는 처분권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1년 3월 23일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시도·감독기관인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이 처분권자(청)에게 직접 구제 조치를 명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심사 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 2)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의2: 「교원지위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기간은 구제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90일 이내로 한다.
- 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의3: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원지위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이하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처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처분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이하 생략)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등에 관한 규정(내부규정)」(이하 “심사 규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르면 교원소청위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거나 지도·감독기관에 이행의 독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소청위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신설 조항 등의 취지에 맞게 지도·감독기관(교육부장관, 교육감 등)이 적시에 구제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의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정비 등을 통해 처분권자의 구제조치 이행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적시에 지도·감독기관에 통지하는 등 구제조치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교원소청위는 2018년 3월 이후 수차례 「교원지위법」이 개정⁴⁾ 되었음에도 2018년 3월 7일 이후 내부규정인 「심사규정」을 정비하지 않는 등 구제조치 이행관리 방안 마련에 소홀하였다.

그 결과, 지도·감독기관이 적시에 구제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의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구제조치 이행관리에 있어서 [표 2]와 같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표 2] 교원소청위 이행관리 절차 및 관련 규정

구분	내용	(가) 사유	(나) 조항	(다) 기한
< 이행 여부 확인 > < 이행 촉구·독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권자가 제출한 구제조치 이행 여부 확인 처분권자에게 이행 촉구 및 지도·감독기관에게 이행 독려 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하지 않음)	심사규정 제29조 (내부규정)	(미규정)
↓				
< 이행 결과 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감독기관에게 처분권자가 제출한 구제조치 검토 후 이행 결과 통지 	-	(미비)	(미규정)

4) 2019.4.16., 2019.4.23., 2019.12.3., 2019.12.10., 2021.3.23., 2022.12.27., 2023.9.27., 2024.3.28. 일부개정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제조치 이행 촉구·독려 사유 미정

교원소청위는 [표 3]과 같이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 처분권자가 제출한 504건의 구제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지도·감독 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에 통지하였으나, 처분권자에게는 그 결과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다.

[표 3] 구제조치 이행 여부 확인·통지 현황

(단위: 건, 2021.12월~2024.2월 기준)

구분	교육부			시도교육청			타부처·지자체			합계		
	이행	불이행	계	이행	불이행	계	이행	불이행	계	이행	불이행	계
2021년	4	0	4	1	0	1	0	0	0	5	0	5
2022년	148	3	151	59	0	59	7	0	7	214	3	217
2023년	131	6	137	82	1	83	12	0	12	225	7	232
2024년	27	4	31	16	0	16	3	0	3	46	4	50
계	310	13	323	158	1	159	22	0	22	490	14	504

그런데 「심사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권자에게는 이행을 촉구하거나 지도·감독 기관에게는 이행 독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교원소청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원소청위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 구제조치를 불이행하고 있는 14건의 처분권자에게도 추가적인 이행 촉구를 하지 않았고, 지도·감독기관에게도 동 처분권자에 대한 이행 독려를 요청하지 않았다.

5) 실지 감사 기간 중 교원소청위 답변: 통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말함

나. 구제조치 이행 결과 지도·감독기관에 통지할 근거 조항 미비

교원소청위는 「심사규정」에 처분권자가 제출한 구제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지도·감독기관에 통지하는 것과 관련한 조항을 내부규정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참고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위의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위에만 제출하므로 지도·감독 기관에게 통지를 위한 조항은 필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다. 구제조치 이행 결과 확인 후 지도·감독기관에 통지까지 소요 기한 미규정

교원소청위는 처분권자가 제출한 구제조치 이행 결과 확인 후 통지에 필요한 기한을 「심사규정」 등에 규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2024년의 경우 처분권자가 제출한 50건의 구제조치 결과를 확인 후 지도·감독기관에 통지하는 데까지 소요 기한이 최소 14일에서 최대 65일까지로 상이하였다.

[표 4] 구제조치 이행 결과 확인 후 통지 경과일

구분	건	경과일*			비고
		최소	최대	평균	
2024년	50	14	65	36.2	불이행 4건

* 산식: 구제조치 이행 결과 확인 후 통지일(교원소청위→지도·감독기관) - 구제조치 이행 결과 제출일(처분권자→교원소청위)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교원소청위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인 「심사규정」을 정비하지 못하였으나, 그간 인용 결정된 사건의 결정서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면서 처분권자가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교원소청위에 제출하도록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권자가 제출한 구제조치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도·감독기관에 통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교원소청위는 향후 개정 법률의 내용과 운영상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여 내부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2021년 3월 23일 일부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신설 조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이 적시에 구제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의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교원소청위의 구제조치 이행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교원소청위가 처분권자가 제출한 구제조치 이행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적기에 지도·감독기관에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청심사 결정을 불이행하고 있는 처분권자가 있는 경우 지도·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위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도·감독기관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교원소청위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교원소청위가 내부규정 정비 등을 통해 구제조치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지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원활하게 구제조치 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사규정」을 정비하는 등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교 육 부

기관주의·통보

제 목 소송비용 청구 및 처리 지연

소 관 기 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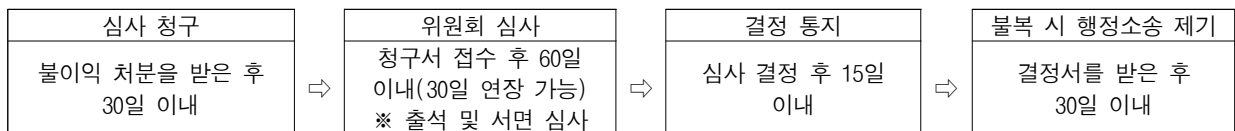
조 치 기 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내 용

1. 업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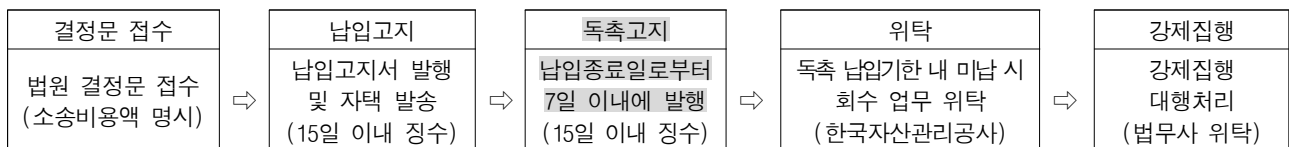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라 한다)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교육부의 소속기관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그림 1]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절차



교원소청위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등6)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피고의 지위로 대응하며, [그림 2]와 같이 승소 확정판결 결과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하여 국고에 납부하도록 처리7)하고 있다.

[그림 2] 소송비용 처리 절차(승소 시)



6) 국·공립 교원은 원처분청(대학,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7)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입고지, 독촉,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납입된 소송비용은 국고에 입금됨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에 따르면 교원소청위는 교원의 소청심사 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관련 소송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 일반원칙 - 5. 수입관리 강화에서 5-1. 수입징수 원칙에서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고금 관리법」을 참고하도록 하며, 5-2. 미수납채권 회수에서는 채권 보전 및 회수를 위한 조치 시행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납부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이행의 청구, 체납처분의 진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채권 관리법」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국고금이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납입의 고지)에 따르면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수입징수관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채권 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독촉)에 따르면 채권 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에 따라 고지된 납입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법무부장관에게 경매나 그 밖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요청하거나 강제집행 절차, 이행청구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연체 국가채권 채납액 회수업무 위탁 기준안(교육부)”⁸⁾에 따르면, 개인 또는 기관당 징수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징수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부터 10년 미만의 채권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소청위는 승소 판결 소송비용의 징수를 위해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소송의 원고에게 납입고지를 하고 납입기한이 지난 날 부터 7일 이내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한 채납액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납액 회수 업무의 위탁 처리를 하거나 강제이행의 청구, 채납처분 진행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 기간 동안 교원소청위의 소송비용 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원소청위는 [표]와 같이 소송비용을 납입하지 않은 소송의 원고(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2021년부터 총 131건의 독촉장을 발급하였는데,

[표] 소송비용 청구(독촉장 발급) 현황

구분	독촉장 발급 현황(건수)		
	정상발급	지연발급	발급건수 소계
2021년	18	2	20
2022년	62	1	63
2023년	16	4	20
2024년	20	8	28
합계	116	15	131

8) (공문) 국가채권 채납액 회수업무의 위탁기관 활용 및 위탁기준, 유의사항 등 안내(교육부)

이 과정에서 교원소청위는 [별표 1] “소송비용 청구(납입고지 및 독촉) 현황”과 같이 채무자 M에게 납입기한(2023. 7. 12.)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222일이 지난 2024. 2. 20.에 독촉장을 발급하는 등 총 15건(소송비용 합계 74,927,800원)의 채권을 관리하면서 독촉장 발급을 최소 12일에서 최대 222일 지연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에 위탁 중인 13건에 대해서는 [별표 2] “소송비용 위탁 처리 현황”과 같이 최초 납입고지일과 위탁 처리일 간에 최대 521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교원소청위는 이전 종합감사(2015년도)에서 총 34건의 소송비용 합계 87,870,040원의 채권을 관리하면서, 납입고지 또는 독촉장 발급을 지연 처리하여 관련자 주의 처분 및 ‘소송비용 확정 시 소송비용 납입고지 및 독촉장 발급 업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초 납입고지의 지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소송비용 징수 업무 처리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미회수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독촉장 발급과 관련하여 이전 감사에서는 총 30건(미발급 3건 포함)이 지연 처리되었던 반면, 이번 감사에서는 총 15건(미발급 없음)이 지연 처리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교원소청위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소송비용의 납입기한이 경과한 채무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납입을 유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재 불명이나, 채무자의 납입 의지가 불투명한 경우 지속적으로 납입을 유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독촉장 발급이 지연되었고,

소송비용 위탁 처리의 경우 채무자의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반영하여 자발적인 변제 유도를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인 교원이 신분 상실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하다 보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송비용 위탁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교원소청위는 이번 감사 직후 소송비용 위탁 처리 업무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매월 1일에 납입고지서 발행·발송 및 위탁 의뢰, 15일에 독촉고지서 발행·발송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연 없이 신속한 납입유도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해당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를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교원소청위가 이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초 납입 고지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독촉장 발급 지연 건수의 감소와 더불어 독촉장이 미발급된 경우도 발생하지 않은 점, 독촉장 발급 및 위탁 업무 처리 지연의 발생 사유로 채무자의 실직 등 개인 상황을 고려하려던 과정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고려할 때 교원소청위의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번 감사 이후 매월 납입·독촉고지서 발행 및 위탁 의뢰를 정례화하여 소송비용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적인 조치를 즉시 시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 ① 소송비용 발생에 따른 독촉장 발급 및 소송비용 위탁 처리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관주의)
- ②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1]

소송비용 청구(납입고지 및 독촉) 현황

연번	채무자명	소송비용 (원)	납입고지 (최초 납입기한)	납부 독촉		비고	
				독촉장 발급일 (실제)	독촉장 발급 지연일수	감사일 현재 처리 상황	2025.2.10. 기준 처리 상황
1	M	-	-	-	222	독촉 中	위탁 中
2	N	-	-	-	47	☆☆	위탁 中
3	O	-	-	-	12	☆☆	위탁 中
4	P	-	-	-	218	☆☆	위탁 中
5	Q	-	-	-	19	☆☆	위탁 中
6	R	-	-	-	16	☆☆	위탁 中
7	S	-	-	-	74	☆☆	납부완료
8	T	-	-	-	61	☆☆	위탁 中
9	U	-	-	-	14	독촉 中	위탁 中
10	V	-	-	-	14	독촉 中	납부완료
11	W	-	-	-	14	독촉 中	납부완료
12	X	-	-	-	14	독촉 中	납부완료
13	Y	-	-	-	14	독촉 中	납부완료
14	Z	-	-	-	14	독촉 中	위탁 中
15	AA	-	-	-	14	독촉 中	납부완료
합계		74,927,800					

[별표 2]

소송비용 위탁 처리 현황

연번	채무자명	소송비용 (원)	납입고지 (최초 납입 고지일)	위탁 (☆☆처리중)		2025.2.10. 기준 변동 상황
				위탁일	최초 납입고지일 기준 소요일	
1	N	-	-	-	430	
2	O	-	-	-	252	
3	P	-	-	-	521	
4	AB	-	-	-	53	
5	AC	-	-	-	347	
6	AD	-	-	-	250	
7	AD	-	-	-	245	
8	AE	-	-	-	158	
9	AF	-	-	-	158	
10	Q	-	-	-	151	
11	R	-	-	-	149	
12	S	-	-	-	143	납부 완료
13	T	-	-	-	125	
합계		67,097,490				

IV. 현지조치 사항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1. 소청심사제도 안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청심사 청구 기한 등을 포함한 교원소청심사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부족 <p>【「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청구 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는 경우가 없도록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 하시기 바람
2. 중앙고충심사 결과 처리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고충심사결정 44건 및 고충 청구 취하 18건 총 62건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미통지 <p>【「중앙고충에 관한 규정(내부규정)」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규정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 처리를 하시기 바람